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7890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89호	김현정의원	2024.8.28.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2536호	김용태의원	2025.8.29.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5.11.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가 제외되어 특수학교 신·증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노후주택 개선사업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예외적용 근거가 없어 개발사업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현물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포함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8조).

나.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의 경우와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안 제3조 제1항).

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제9항 및 제5조제5항제5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을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

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제8조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리모델링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

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현금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⑧ -----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⑥ (생략)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
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
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
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

-----.

1. ~ 4. (현행과 같음)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
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

-----중학교·고
등학교 및 특수학교-----

-----.